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지사 안내사항

권리와 혜택 요청

동부경제회랑(EEC)의 투자촉진법을 따름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2/2563호를 따름

2020년 1월 15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2/2563호 동부경제회랑(EEC)의 투자촉진법을 따른 이행의 보다 명확한 내용을 명시하기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림

1. 동부경제회랑(EEC) 투자촉진을 위한 권리와 혜택 요청에 대한 규정

- 1.1 기술과 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한 교육기관과 협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 권리와 혜택을 요청한 자의 경우 "동부경제회랑(EEC) 내의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약체결서(MOU) 또는 협력계약서"를 투자촉진위원회 지사에 2021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해야함
- 1.2 교육기관과 협력 계획은 지사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계획중 중요한 부분인 협력계획에 대한 변경, 직업훈련계획 수정, 직업훈련기간 변경등에 있어 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이 있는 경우 계속 진행을 하기 위한 지사의 동의를 받기 위해 프로젝트 변경요청서를 지사에 요청해야함
- 1.3 협력 계획은 과학과 기술분야의 인적 개발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해진 기존 계획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이는 동부경제회랑(EEC)의 개발을 위한 투자촉진법 조건을 따르고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은 이 혜택이 끝나기전에 정해진 혜택을 받는 기간이나 받은 법인세 면제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총 5년을 초과할수가 없으며 이는 투자촉진증명서가 발급된날로부터 계산함
- 1.4 협력 계획을 따르는 실행 계획 조사를 위한 증명 서류는 투자촉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과 협력 계획을 따라 발생한 결과를 보여주는 증명서로 1.3 항목에 명시된 지사가 지정한 날 이내에 지사가 이에 대한 서류를 검토할수 있도록 제출해야하며 이 서류는 직업훈련을 위해 등록한 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숫자 또는 교과과정이 담긴 서류등이 해당

2. 투자촉진위원회가 동의하는 협력 교육기관에 대한 요구조건 사항

- 2.1 과학과 기술분야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하거나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합시키는 과정 준비로

“학위 프로젝트”는 교육기관, 정부관련 기관 혹은 평가나 측정 혹은 교육을 관리하는 관련시설들간의 협력 체결을 맺은 것으로 교육을 받는 자는 교육기관과 실무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직업교육훈련소는 각 교육 수준에 따라 최소 1번 이에 대한 과정을 진행 해야하고 직업훈련 단계의 경우 직업훈련교육 시간이 최소 1년6개월, 그리고 고등 직업훈련 단계의 경우 최소 1년이어야 하는 조건으로, 이는 직업교육훈련 위원회지사의 기준을 따름

2.2 과학과 기술분야의 교육과 업무를 통합한 교육 또는 고등교육 수준의 통합업무 교육은

“협력 교육(Cooperative Education)”으로 교육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는 고등교육기관과 사업장을 보다 발전시켜 대학생이 실무적인 업무(Work-based Learning)를 통해 경험을 쌓을수있도록 하거나 사업장에서 도움이 되는 특별 프로젝트(Special Project)를 통해 통합이론이나 실무업무 프로젝트 또는 풀타임 직업을 통해 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생은 사업장에서 실무 업무를 경험 해야하고 이 기간은 최소 16주 이상 근무(Man-week)로 이는 고등교육 과학부 연기혁신처의 기준과 수준을 따름 (고등교육 과학부 연기혁신처)

2.3 기술과 과학분야의 직업훈련 단계와 고등교육 단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합한 통합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를 익힐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

과학기술개발부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인 “Work-integrated Learning(WiL) 프로젝트는 기술과 과학분야의 인재들을 배출하기위함과 필요로하는 관련 산업과 연관된 직업훈련과 고등교육 단계의 품질 높은 혁신을 목표로 이곳으로 들어와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대학생은 공장에서도 학교처럼 교육을 받는 형식으로, 실제 사업장에서 업무를 통해 교육을 받을수있는 교육기간을 가지게 되는 형식”임 (과학기술개발부)

2.4 과학과 기술분야의 협력교육으로서 실무 교육 또는 통합교육으로 태국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으로 2.1-2.3의 항목이외에도 투자촉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것을 따르는 교육

3. 동부경제회랑(EEC)의 투자촉진에 있어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요청할 시에 필요한 증명 서류는 아래와 같음

3.1 동부경제회랑(EEC) 내부에서의 투자촉진 수단을 위한 추가 권리와 혜택 요청서

3.2 학생과 대학생의 직업훈련(프로젝트와 협력하는 계획 WiL의 경우 과학기술개발부의 인증이 필요)사업장과 교육기관계약체결서(MOU) 또는 협력계약서로 이에 대해 필요

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교육기관이나 협력하는 학부 또는 관련 학과의 이름
- (2) 동부경제회랑(EEC)의 투자촉진에 대한 이미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직업훈련을 할 학생과 대학생수, 공장안에서의 학교시스템의 정규 교사 준비 자료 등
- (3) 교육과정 훈련코스과 대략적인 실습교육
- (4) 프로젝트의 기간과 프로젝트 운영 계획

4. 동부경제회랑(EEC)의 투자촉진법으로 들어올수 없는 사업

4.1 A1과 A2, A3에 해당하는 사업 항목들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장들이 해당

활동범주 1.7 수산업

활동범주 7.1.6.1 국가간의 해양 초고속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

활동범주 7.3.1 육로 운송 사업

활동범주 7.3.3 해로 운송 사업

활동범주 7.3.4 항공 운송 사업

활동범주 7.22.1 페리 또는 유람선 서비스 사업이나 렌트사업

활동범주 7.28.4 환자, 의사, 의료기기 운송 서비스 사업 (항공, 해로, 육로)

4.2 A1과 A2, A3에 해당하는 사업 항목들로 꼭 위치가 정해져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동부경제회랑(EEC)에 위치하지 않은 사업들이 해당

활동범주 2.17 공익 사업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또는 강철콘크리트 생산 사업

활동범주 6.15 몸을 청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사업 비누, 샴푸, 치약, 화장품사업

활동범주 6.16 공익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생산으로 플라스틱 상자 사업

활동범주 6.17 표피나 종이로 생산한 제품 및 종이박스 사업

활동범주 7.24 산업 공장지대 및 재고창고 개발 사업

활동범주 7.28.3 요양시설 사업

4.3 동부경제회랑(EEC)에서 프로젝트를 설립할 시 추가 권리와 혜택을 부여받는 사업들

활동범주 7.31 지식 도시 개발 사업

활동범주 7.32 지식 도시 시스템 개발 사업

5. 2020년 1월 2일 이후에 투자촉진을 요청하는 요청서의 경우 위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는 점을 알림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림

투자촉진위원회 지사

2020년 2월 26일